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 관 경 고

제 목 ○○아파트 뒤 도로옹벽 붕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남구

내 용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2015. 2. 5. 남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표1] 남구 ○○동 ○○아파트 뒤편 옹벽 붕괴현황

위치	아파트 현황		붕괴일시	붕괴원인	피해현황	급경사지 지정	비고
	규모	세대					
○○동 000-0	지하 1층 지상15층 (' 93.00.00준공)	315세대 933명	2015.0.0.(목) 00:00분경	옹벽상부에 분포한 토사사면의 풍화진행으 로 강도약화	차량매몰 및 파손	' 09.10.27. B등급	

1. 파손차량 보상금 지급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¹⁾의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여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맞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동 ○○아파트 뒤편 옹벽이 붕괴되어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있던 차량45대(이륜차 포함)가 매몰·파손되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붕괴 후에 임의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옹벽 붕괴사고 관련 피해차량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소급 적용²⁾하고 차량보상금으로160,933,510원을 아래 [표2]와 같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2) 광주광역시 남구 훈령 제 314호로 제정(2015. 2. 9.) 후 2016. 4. 5.일자로 폐지함

이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2] 남구 ○○동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 보상금 지급현황

구 분	지급기간	건 수	지 급 액(원)	비 고
합 계		41	301,401,860	
차 량	2015. 3. 2. ~ 4. 8.	30	281,676,800	구상금 포함
이륜차	2015. 3. 2. ~ 3. 24.	8	11,388,500	
기타(물품)	2015.3 . 6. ~ 3. 24.	3	8,336,560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³⁾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총16대 120,743,290원에 대해 이중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2.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따른 부당지급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3) ○○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 발생 시기(해빙기에 해당되지 않음) 및 붕괴원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재난에 더 가까운 재난사고임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사고에 따른 보상금 160,933,510원을 보험회사 대신 선 지급하고, ○○○○ 보험사 등 7개 보험사에 서 위 관서를 상대로 구상권이 청구되자, ○○아파트 뒤편 옹벽 붕괴에 대한 책임이 위 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상권이 청구된 금액 120,743,290천원을 아래 [표3]과 같이 그대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3] 남구 ○○동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 구상금 지급현황

구 분	지급기간	건 수	지 급 액(원)	비 고
합 계		16	120,743,290	
○○○○	2015. 3. 24.	1	7,590,000	
○○○○○○○	2015. 4. 8.	1	18,100,000	
○○○○○○	2015. 3. 13. ~ 3. 24.	3	13,852,000	
○○○○○○○○○	2015. 3. 13. ~ 3. 24.	6	58,092,690	
○○○○○○○○○	2015. 3. 13.	1	796,000	
○○○○○○○○○○○	2015. 3. 24.	1	1,078,900	
○○○○○○○○○	2015. 3. 13. ~ 3. 24.	3	21,233,700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기관경고] 앞으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청구되어 지급된 구상금과 관련하여 ○○아파트

뒤편 옹벽 붕괴에 대한 책임이 남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